

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(2017. 8.)

①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(2017. 7. 13. 시행) 반영 / ② 지침과 법령·조례 간 충돌 우려 해소

개정 배경

- 현행 「민간위탁 관리지침」(2016. 8.)에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(2017. 7. 13. 시행)을 반영하고, 기존 지침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와 모순·충돌이 우려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부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-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 동의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지침을 즉시 현행화하여 **사업부서에서 의회동의를 누락하는 문제 등을 사전 방지**

① 조례 개정사항 반영 — 의회 동의 주기

재위탁·재계약 시 의회 동의 (조례 제4조의3제2항)

- 기존 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되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**매 4회차마다(4, 8, 12...) 의회의 동의를** 받아야 함
- 개정 —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**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**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- 경과조치 — 민간위탁 시행 이후 **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**는 2017. 7. 13.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(개정 조례 부칙)

동의 시점 예시 (개정계획 참고자료)

- 2년 단위 위탁 — 2013. 8. 동의 후 2014. 1. 개시 ⇒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2020. 8.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·재계약(2022. 1.~) 개시 전에 동의 필요
- 3년 단위 위탁 — 2014. 8. 동의 후 2015. 9. 개시 ⇒ 2021. 8.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·재계약(2021. 9.~) 개시 전에 동의 필요
- 동의 규정 신설(2012. 3.) 이전에 개시하여 동의 이력이 없는 사무 ⇒ 조례 개정(2017. 7.)으로 다음 재위탁·재계약(2018. 1.~) 개시 전에 동의 필요

① 조례 개정사항 반영 —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

의회 동의 시 성과보고서 제출 (조례 제4조의3제3항 신설)

-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**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**해야 함
-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— 성과보고서를 **종합성과평가보고서로 갈음** 가능(법령·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)
- 종합성과평가 대상이 아닌 사무 —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 작성하도록 **작성방법을 지침에 기재**하고 **표준양식(별첨 5)을 신설**. 지도·점검 체크리스트의 운영성과 분야 점검항목을 포함하고, 사업계획·성과목표에 대한 **실적평가 위주로 작성**
- 성과보고서 구성(별첨 5 예시) — 사업개요(추진근거·사업내용·추진경과·사업현황) / 성과평가(목표 대비 실적, 연도별 성과지표·만족도조사·예산 대비 집행과 정산) / 향후계획(주요성과·보완과제·개선방안)

② 지침과 법령·조례 간 충돌 우려 해소 — 10년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

문제점

- 현행 지침은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**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**하도록 규정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, 법령 또는 조례와 충돌 발생 우려
- 사례① 법령·조례가 특정기관 위탁을 명시 — 의료급여 급여비용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),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·운영(체육시설설치조례 제16조), 시정 연구·조사 업무는 서울연구원에 우선 위탁(서울연구원육성조례 제4조)
- 사례② 공개모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— 특정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가 한 곳으로 한정된 하수처리시설 운영,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한 곳뿐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(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제33조 제7항)
- 법률지원담당관 검토(2017. 7. 19.) — 재계약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할 만한 **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외를 둘 여지가 있으므로,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예외기준을 마련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**

개선 (지침 50쪽 개정)

- 「**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**」라는 전단을 신설하여,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 마련
- 단,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는 수의계약의 명백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부터 **종합성과평가보고서(또는 별첨 5의 성과보고서)**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

향후 일정 (당시)

- 관리지침 개정 및 사업부서 안내 2017. 7. 31. / 부서별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제출 ~2017. 8. 3.

※ 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결재문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 개정계획(조직담당관-9829, 2017. 8. 1.)의 본문과 붙임 1 「주요 개정사항」의 발체임. 지침 개정전문(붙임 2)은 실지 아니하였음. 원문은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원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.